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3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김미애의원안)	2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6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8.
- (3) 회 부 일 : 2024. 8.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김미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과세표준 및 세율(제55조)	☐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td><td>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천8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7억 8천만원 +200억원 초과금액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5억 8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 8천만원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 8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5억원</td><td>10%</td></tr> <tr> <td>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5천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20%</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599억 5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2%</td></tr> </tbody> </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세율	~5억원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5천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20%	3천억원 초과	599억 5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 8천만원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 8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세율																		
~5억원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5천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20%																		
3천억원 초과	599억 5천만원 +3천억원 초과금액의 22%																		

* 김미애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39)

☐ 개정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2%p 인하하려는 것임.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어 그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었음. 20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 구간에서 세율이 $\Delta 1\%p$ 인하되어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음.

[법인세율 변경 현황]

과표구간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2023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9%
1~2억원	28%	27%	25%				25%	22%	2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2%	25%	24%
과세표준 구간	2개						3개	4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어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4.6%에 달하였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비중이 19.4%로 감소하였다가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여 23.4%로 다시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 중(B/A)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1
2019	293.5	72.2	24.6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법인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 소득금액 기준 16.4%였고 과세표준 기준 18.5%였음.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금액 기준	16.0	17.5	15.8	16.1	16.4
과세표준 기준	17.6	19.1	17.5	18.1	18.5

주) 외국납부세액 및 지방세 미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상위 소득금액 구간에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특징임. 2022년 기준으로 5,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법인이 전체 법인수(98.2만개)의 0.01%(100개)를 차지하지만 과세표준의 38.3%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42.1%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525개로 전체 법인 수의 0.5%인데, 과세표준의 73.1%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

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에 달하고 있음.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소폭 감소하여 20.3%로 나타나고 있음.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2022년)]

구분	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만개	%	누적 %	조원 (A)	%	누적 %	조원 (B)	%	누적 %	B/A, %
합계	98.2	100.0	-	475.1	100.0	-	87.8	100.0	-	18.5
0 이하	41.0	41.7	100.0	0.0	0.0	100.0	0.2	0.2	100.0	-
0~1억원	35.3	35.9	58.3	8.4	1.8	100.0	0.8	0.9	99.8	9.5
1~5억원	15.5	15.8	22.3	29.8	6.3	98.2	2.8	3.2	98.9	9.5
5~10억원	2.9	3.0	6.6	18.0	3.8	92.0	2.2	2.5	95.6	12.4
10~50억원	2.7	2.7	3.6	48.4	10.2	88.2	7.3	8.3	93.1	15.0
50~100억원	0.4	0.4	0.9	23.4	4.9	78.0	3.9	4.5	84.8	16.8
100~500억원	0.4	0.4	0.5	61.0	12.8	73.1	11.5	13.1	80.4	18.9
500~1,000억원	0.05	0.05	0.1	29.0	6.1	60.2	6.0	6.8	67.2	20.6
1,000~5,000억원	0.04	0.04	0.1	74.9	15.8	54.1	16.1	18.4	60.4	21.5
5,000억원 초과	0.01	0.01	0.0	182.1	38.3	38.3	36.9	42.1	42.1	2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3.8%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5.4%로 증가하였음. 이는 G7 평균인 3.1%에 비해 2.3%p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3.8%에 비해 1.6%p 높은 수준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4.2	4.3	3.4	3.8	5.4
G7	일본	4.1	3.8	3.9	4.5	4.6
	캐나다	4.1	3.7	4.4	4.6	4.2
	영국	2.5	2.3	2.4	2.9	3.1
	프랑스	2.1	2.2	2.3	2.5	2.9
	독일	2.1	2.0	1.6	2.4	2.4
	이탈리아	1.9	2.0	2.1	1.9	2.9
	미국	1.4	1.3	1.3	1.6	1.8
	평균	2.6	2.5	2.6	2.9	3.1
OECD 평균		3.1	3.0	2.8	3.3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22년 기준 16.8%로 G7 평균 9.9% 및 OECD 평균 12.1%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15.7	15.7	12.1	12.8	16.8
G7 평균	7.6	7.2	7.3	8.2	9.9
OECD 평균	10.1	9.6	9.1	10.2	1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성의 의견이 있음.

첫째,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이는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확대에 의해 유발되는 고용증가 역시 경제성장의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음.¹⁾

또한, 법인세율 1%p 인하가 투자 증가와 고용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실질 GDP를 0.21%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1.13%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음.²⁾

둘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지방세 포함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높은 수준인데,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가능성이 있음.

2023년 기준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6.4%인데, 이는 OECD 평균 23.7%에 비해 2.7%p 높은 수준임.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은 24%인데, 이는 G7 평균 21.4%보다 2.6%p 높고 OECD 평균 22.1%보다 1.9%p 높은 수준임.

1) 남창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264호, KDI, 2016.11. p.6.

2) 김학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3호, 2017. 10.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7.5	27.5	27.5	27.5	26.4
G7 평균	27.6	27.2	26.7	26.3	27.2
OECD 평균	23.9	23.7	23.6	23.6	2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추이(중앙정부 기준)]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5.0	25.0	25.0	25.0	24.0
G7 평균	21.8	21.4	20.9	20.6	21.4
OECD 평균	22.2	22.0	21.9	21.9	2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미국은 2018년부터 기존 15~39%의 누진세율 체계를 21%의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영국은 2017/2018 회계연도에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였음. 일본은 법인세율을 2014년 25.5%에서 2022년 23.2%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사례가 다수 관측되고 있음.³⁾

셋째, 법인세율 단순화는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음.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1개(24개국) 또는 2개(10개국)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과세표준 구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2022. 11. 22.

간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4개)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영국(3개)과 코스타리카(5개)뿐임.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수]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5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2개	10개국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개	2개국	룩셈부르크, 영국
4개	1개국	한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누진세 체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도 상존함.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IMF는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해 과표구간 단일화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음.⁴⁾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 의견이 있음.

첫째, 법인세는 우리나라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IMF는 2018년 2월 한국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세수 확보를 권고한 바 있음. “Significant efficiency and revenue gains could come from addressing multiple distortion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including by reducing the number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to one.”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재정수입 변화	△3,989	△47,111	△50,196	△52,995	△55,834	△210,125	△42,0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수가 2026년 3,989억원, 2030년 5조 5,83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1조 125억원(연평균 4조 2,0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법인세는 국세수입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인데,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⁵⁾

둘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투자 증가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⁶⁾

또한,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⁷⁾ 한국신용정보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

5)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2024. 8.

6) 김동훈,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⁸⁾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입장과 양자간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양립하는 상황임.⁹⁾

셋째, 하위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상향조정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총부담세액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감소하는 한편, ‘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증가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전체 산출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억원 이하	2,468	2,632	2,779	2,928	3,077
3억원 ~ 5억원 이하	△9,580	△10,216	△10,788	△11,369	△11,946
5억원 ~ 200억원 이하	△2,520	△2,687	△2,837	△2,990	△3,142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7,396	△7,888	△8,329	△8,777	△9,223
3,000억원 초과	△38,158	△40,692	△42,970	△45,283	△47,5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FDI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201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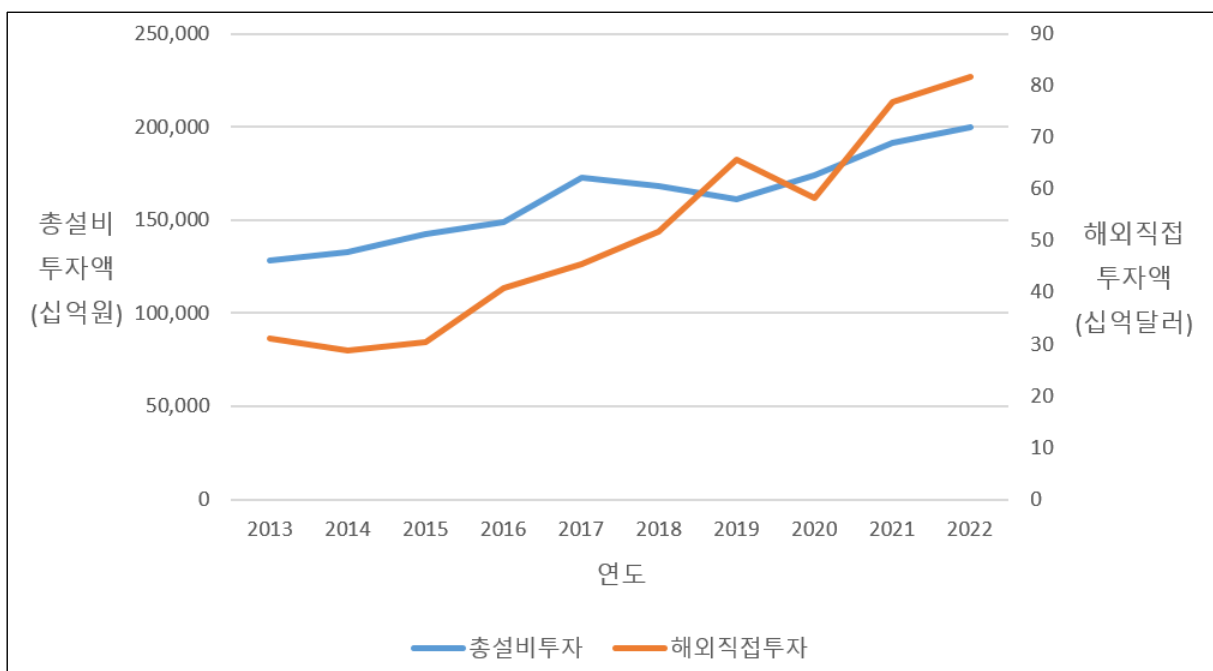
8)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9)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024. 6.

넷째, 법인세 감면 효과가 해외로 누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 간 동향을 살펴보면 총설비투자¹⁰⁾에 비해 해외직접투자¹⁰⁾가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총설비투자액은 2022년 199조 9,450억원으로 2013년 128조 6,590억원 대비 55.4%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액은 2022년 816억 7,700만 달러로 2013년 312억 1,300만 달러 대비 161.7% 증가하였음.

[2013년~2022년 총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는 최근의 경제상황, 기업의 투자 동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추세, 세수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0)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임.

문 의 처

02)6788-5155
